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세무1과	1

(2013. 6. 24)

마포구의의회 행정건설위원회
[전문위원 명 금 길]

1. 안 건 명

가.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6월 3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가. 2013년 6월 7일

나. 의안번호 : 13-38

4. 관련근거

가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65조 개정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3년 4월 1일 「지방세기본법」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관허사업 제한 기준금액을 규정하고, 어려운 용어를 납세자 입장에서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지방세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임.

< 주요내용 >

- (1) 안 제15조에서는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중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,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하기 10일전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사전통지 하도록 함.
- (2) 안 제51조5호에 “영 제110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를”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규정을 추가함.
- (3) 안 전반에 대하여 “일시에”를 “한꺼번에”로,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, “통신일부인을 날인받아”를 “접수인을 날인 받아”로 등 어려운 용어를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정비함.

[검토의견]

동 조례안은 2013.1. 1일자로 「지방세기본법」이 개정되어 2013. 4. 1일자로 시행되고 이어서 「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」도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도 상위법인 「지방세기본법」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[조례규칙심의회]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